물 품 관 리 규 정

제정 2012.11.29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"협회")의 자산 중 물품의 취득, 보관,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) 당 협회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물품의 범위)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당 협회가 소유하는 동산과 당 협회 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외의 동산을 말한다.
 - 1. 현금
 - 2. 유가증권
 - 3. 부동산이 종물 중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
- 제4조(물품의 분류)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로 분류하고 고유번 호를 부여한다.
 - ② 제①항의 품목별 고유번호는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물품의 관리체계

- 제5조(물품관리관 등 지명) 회장은 물품관리관, 분임물품관리관, 물품운용관, 물품출 납관리워을 지명한다.
- 제6조(물품관리관 등 업무) ① 물품관리관, 분임물품관리관(이하 "물품관리관"에 포함한다)은 당 협회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하다.
 - 1. 물품관리에 관한 소요판단(수급관리계획의 수립)
 - 2. 물품의 취득 및 재고 고려
 - 3. 관리전환 및 불용결정의 승인 신청

- 4. 손망실 보고 및 처리요청
- 5. 기타 물품관리 사무의 집행
- ② 물품운용관, 분임물품운용관(이하 "물품운용관"에 포함한다)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.
 - 1. 물품소요판단 및 예산의 반영
 - 2. 소관물품의 관리
 - 3. 사용전환 및 불용결정 요청
 - 4. 손망실 보고 처리요청
 - 5. 기타 물품관리 운용 및 출납에 관한 사항

제3장 물품의 관리 제1절 취득과 사용

- 제 7 조(취득) 물품출납관리원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,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- 제 8 조(검수원) 검수원은 납품물품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검수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.
- 제 9 조(검수) 당 협회가 구입 또는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.
 - 1. 검수원은 물품의 수량, 품질, 외관, 형상, 규격, 표식,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, 규격서, 시방서 견본 등과 비교, 대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.
 - 2. 검수결과 합격판정을 하였을 때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조건과 상이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3.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용) ① 물품을 새로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② 물품의 사용자는 물품출납관리원의 관리 하에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준수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절 반납과 보관

- 제11조(반납) 물품출납관리원은 소관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는 물품관리원에게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물품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보관)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보관의 방법) 물품관리원, 물품출납관리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성질별, 품명별, 규격별, 상태별, 이동상황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제3절 처 분

- 제14조(불용결정의 승인신청) 물품운용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처분할 필요 가 있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해 불용결정 승인신청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, 품명, 규격, 수량 및 가액
 - 2. 물품의 구입 연월일
 - 3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
- 제15조(불용결정의 기준) 불용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 - 1. 사용필요성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
 - 2.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 - 3.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것
- 제16조(불용결정) 물품관리관은 제14조의 불용결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물품에 대한 상태(내용 연수, 상태, 기능 등)를 파악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매각)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.
- 제18조(불용품의 폐기) 물품관리관은 당 협회의 결정된 물품이 부패, 노후화 등 기타 사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.

제 4 절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

제19조(정기 재물조사)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 협회 전반에 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재물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

- 예산절약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출납관리원 소관에 한하여 자체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물품관리관은 매년 10월 20일까지 정기 재물조사의 절차, 방법 및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12월 10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재물조사 방법)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폐창식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개창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21조(재물조사 물품의 가격)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. 다만 그 금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액에 의한다.
- 제22조(재물조정)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원인이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 장부의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절 손망실 처리

- 제23조(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) 물품사용자가 사용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출납관리원은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 물품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변상책임 및 방법) ① 물품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 - ② 변상은 일시변상 및 현금배상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 <2012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(2012.11.29)

[별표 제1호]

| 물 품 요 구 서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|--|--|--|--|--|
| 요 구 부 서 | | | | | | | | | | |
| | 다음과 같이 물품을 | | 용 도 | | | | | | | |
| 담 당 | 팀 장 | 본 | 부 장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물품요구내역 | | | | | | | | | | |
| 품 명 | 규 격 | 단 위 | 수 량 | 비고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| 납 품 검 사 조 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|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|---|-----|---|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-|---|
| 물 | 품 | | 명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 | 약 | : | 자 | | | | | | Ę | H 표 | | | | | |
| 계 | 약 | 금 | 액 | | 급 | 금 원(₩ | | | | | | | |) | |
| 놥 | 품 | 기 | 한 | | | | 년 | 월 | 일 | ~ | 년 | 월 | 일 | | |
| 납 | 품 | 검 | 사 | | | | | | 년 | 윹 | <u>j</u> 6 |] | | | |
| 검 | 사 | 장 | 소 | | | | | | 년 | 윹 | <u></u> |] | | | |
| 비 | | | ন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위 물품의 물품납품 검사결과 및 제사양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되었음을 인정함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Ę | 월 월 |] | 일 | | | | | |
| | 구 | | 분 | | | 실·팀 | | 직 | 위 | | 성 | 명 | ٨- | | 명 |
| 검 | 수 | | 물 | 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검 수 | 원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인 | 수 |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품다 | 개장 | | 물품관리 | 기원 | | | | | | | | | | | |
| ijo | 제 | | 물품출납 | 급 라 원 | | | | | | | | | | | |

물품반납 및 인수증

반납 실·팀 :

| 아래와 같이 반납함.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| | | | 년 | 월 | 일 | | | | |
| | 물품출납관리원 : | | | | | | | | | |
| 일련 번호 | 물품분류 번 호 | 품 | 명 | 규 격 | 단위 | 수량 | 반 납 사 유 | 반납상태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위 | 물품의 반님 | 計을 승역 | 민함. | | | | | | | |
| | | | | 년 | 월 | 일 | | | | |
| | | | | | | | 물품관리원 : | (1) | | |
| Ċ | 위 물품을 인수함.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인수자 | (1) | | |

불용결정승인신청서

| | | | | (분임)물품 | 물 | 물품 운용 | 관 (| (분임)물품관리관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 서 번 호 : 반납 실·팀 : | | | | | 재 | | | | | | |
| - 물품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 결정하고자 하오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하오니 승 |
| 일련 번호 | 물품분류 번 호 | 품 | 명 | 규 격 | 단역 | 귀 수량 | 취득금(| 앤 ㅣ | 취 두 선월일 | 상 타 | 불용 결정 사 유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
년 월 일

[별표 제5호]

물품손망실보고서

| 손 망 실 부 서 | 및 장소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|---|
| 손 망 실 |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
| 손망실을 초려 | 개한 당사자 | | 직위 | | 성명 | | | | |
| 손 망 실 발 견 | 변의 동기 | | | | | | | | |
| 품 명 | 규 격 | 단위 | 수 량 | 금 액 | 취득년월일 | 상 | 태 | ㅂ] | 고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물품출납관리원 | 년의 의견 :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A) 4) | | - 3 | | | | | | | |
| 위와 Q | 밭이 보고합니 | 다.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년 | 월 | | 일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물품 | 출납관리원 | | | | | |
| | | | | 직 급: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성 명: | (1)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